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Oct. 2018

발간년월 2018년 10월(통권 제15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원장

Vol. 15

감리 황진희 본부장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홈페이지 www.kmi.re.kr

금주 Contents - 해양환경 이슈

IMO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박 속도 규제 검토

IMO 회원국들은 선박 감속을 단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방안으로 제안함

■ IMO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ISWG-GHG 및 MEPC 회의를 통해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IMO 초기전략을 채택하였음

- IMO 회원국은 제72차 MEPC(2018.4.9.~4.13.)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IMO 초기전략을 승인하였으며, 2023년 개정된 전략 채택 전까지 지속적인 수정에 합의함
- 초기전략의 단기조치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단기조치 후보로는 EEDI 및 SEEMP와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최적속도 및 선속 감소, 메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 방안 강화, 대체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연구개발 등이 있음

■ 캐나다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우선순위 조치 목록을 제안함^{a)}

- 캐나다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속 감소를 주장하는 의제를 제출하면서, 제73차 MEPC(2018.10.22.~10.26.) 이후 선속 감소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고 2020년 초에 단기조치로 제출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선속 감소를 단기조치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정도, 무역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

■ 청정해운연합(CSC; The Clean Shipping Coalition)은 IMO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구체적인 선박 속도 규제(안)을 제안함^{b)}

- CSC는 국제해운 선종과 선박 크기별 최대 운항속도 강제화의 개념을 제안하고, 최대 속도 규제는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 40%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설명함
- CSC는 연간 최대 평균 운항속도의 규제를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고려하며, 선박의 속도에 최대 절대속도 또는 최대 평균속도를 적용하여 강제화하는 것을 제안함

- 운항 속도의 규제는 기준 속도에 대한 결정을 요구할 것이며, 속도 기준과 최대 속도 목표는 선종과 선박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기준 속도는 과거 AIS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종 및 선박 크기별 평균 운항속도를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기준 속도가 설정되면 영향평가에 따라 선종 및 선형에 따른 최대속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
- IMO의 데이터수집시스템(DCS)에 따른 선박 평균속도는 AIS를 통해 현재 이용가능한 기준속도를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음
- IMO는 AIS를 기반으로 선종 및 선박 크기별 기준치(2015 평균 속도)를 고려하고, 이후 2020년 AIS와 DCS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AIS와 DCS 간 편차가 확인되면 2020년 AIS-DCS 보정 계수를 기준으로 2015년 기준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

<선종 및 크기별 최대 운항속도 예시>

선종	선박 크기	단위	2015 CO ₂ (tonnes)	기준 : 2015 평균속도(knots)	최대속도 예시(knots) (2015 기준 -10%)
컨테이너선	1,000~2,000	T E U	27,214,751	13.60	12.24
	2,000~3,000		20,230,592	13.95	12.56
	3,000~5,000		43,873,447	14.80	13.32
	5,000~8,000		40,864,772	15.44	13.90
	8,000~12,000		42,154,615	15.73	14.16
	12,000~14,500		16,736,899	15.89	14.30
	>14,500		7,869,424	16.86	15.17
벌크선	10,000~35,000	D W T	19,682,329	11.36	10.22
	35,000~60,000		43,578,730	11.56	10.40
	60,000~100,000		53,102,931	11.56	10.40
	100,000~200,000		36,394,686	11.07	9.96
	>200,000		17,961,857	11.82	10.64

자료 : ICCT, 2017.

- IMO DCS는 1년의 운항 관련 데이터를 기록에 보고하도록 선박에 요구할 예정이며, 이러한 보고의무는 보고기간 동안 누적된 시간과 총 항해한 거리를 포함함
- DCS에 따른 보고 의무는 연간 최대 평균속도를 도출할 수 있으며, 기록은 시간 경과에 따른 거리($V=D/T$)의 함수로서 최대속도 준수를 검증할 수 있음

■ 그 외 유럽 국가, 군소도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도 초기전략의 효과적인 후속조치로 선속 감소를 언급함 ^{c),d),e)}

- 유럽 국가(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들은 2023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감속 및 최적속도를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함

- 특히, 노르웨이는 선속 감소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EEDI 프레임 워크를 통해 효과적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함
- 군소도서 개발국(앤티가 바부다, 마셜 제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및 최빈 개도국(케냐)도 초기전략 단기조치 중 운항속도 감소에 대한 분석을 지지함

정부는 선속 감소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국제사회 피력 필요

■ 국제해운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물 수송에 의한 수익 추구에 있으므로 선속 감소는 해운업계의 이익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수의 IMO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저감 초기전략의 조치 후보 중 단기간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선속 감소를 제안하고 있음
- 선박의 속도는 연료비와 운항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해운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침

■ 정부는 선속 제한이 선사를 비롯한 해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해사산업에 유리한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선속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해운시장의 본질을 간과한 임시방편적 방안이므로, 다른 지속가능한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현명함
- 정부는 선속 제한에 따른 해운, 조선 및 기자재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해사산업의 여건을 파악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김보람 연구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zzz3678@kmi.re.kr / 051-797-4640)

참고자료

- a) IMO ISWG-GHG 4/2/8 의제 문서
- b) IMO MEPC 72/7/6 의제 문서
- c) IMO ISWG-GHG 4/2/13 의제 문서
- d) IMO ISWG-GHG 4/2 의제 문서
- e) IMO ISWG-GHG 4/2/3 의제 문서